



종로구보



제 912호 2008. 6. 13.(금)

1.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조 례]

- 제2008-72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
- 제2008-72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제2008-730호 서울특별시종로구지하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규 칙]

- 제2008-519호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 9

[고 시]

- 제2008-27호 주택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안 22

- ◎ 구보는 **종로구 홈페이지(www.jongno.go.kr)** 행정정보→구정소식→구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구보발행일은 매주 금요일이며,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

D-3접수

→

D-2 편집 및 교정

→

D-1 인쇄 및 수송

→

D일 보급

구 보 라 보									

발행인 : 종로구청장 / 편집인 : 기획예산과장 / ☎ 731-0410(팩스 731-0460)

조 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합니다.

2008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종로구 조례 제72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 중 “150미터 이내”를 “300미터 이내”로 하고 “200미터 이내”를
“600미터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인근의 범위를 행정규제 완화 및 주차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 범위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거리제한 완화(제19조)
 - 직선거리 : 150미터 이내 ⇒ 300미터 이내
 - 도보거리 : 200미터 이내 ⇒ 600미터 이내

조 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합니다.

2008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종로구 조례 제72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나목(2) 중 “공유재산 대부신청”을 “국·공유재산 대부신청”으로 하고, 동표동호동목(3) 중 “공유재산 매수신청”을 “국·공유재산 매수신청”으로, 수수료액란 “1,000원”을 “5,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대부 및 매수신청에 관한 수수료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공유 재산과 형평에 맞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공유재산 대부 신청 수수료 (별표)

1) 국·공유재산 대부 신청

신규신청 1건 5,000원, 연장신청 1건 3,000원

2) 국·공유재산 매수 신청

1건 5,000원

조 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종로구지하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합니다.

2008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종로구 조례 제730호**서울특별시종로구지하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종로구지하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종로구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지하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로 한다.

제1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납입고지서의 송달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10조 중 “법 제42조제3항”을 각각 “법 제80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납입고지서의 송달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제9조 중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구청장의”로, “30일내”를 “60일 이내”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과태료 납입고지서의 송달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63조제3항제2호”를 “법 제68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법 제6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2항의 과태료 납입고지서의 송달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제5조(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를 “법 제68조 및 영 제39조”로,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납부통지서”로 하며, 동조제3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고지서”를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법시행령 제42조제2항”을 “영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한다.

별지 제2호 및 제4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 포상금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지체 없이”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별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일원화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 8725호, 공포 2007.12.21, 시행 2008.6.22)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관련 규칙을 이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과태료 납입고지서의 송달 방법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함
- 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 다. 그 밖에 납입고지서, 독촉고지서 등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

규 칙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합니다.

2008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종로구 규칙 제519호**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납입지서의 송달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납입고지서”로 하며, 동조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 납입고지서의 송달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중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종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종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과태료 납입고지서”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과태료 납입고지서의 송달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제9조 중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독촉(체납)고지서”를 “독촉(체납)고지서”로 한다.

별지 제5호 및 제8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납입고지서”로 하고, 동조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과태료 납입고지서의 송달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제7조 중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독촉통지서”를 “독촉고지서”로 한다.

별지 제5호 및 제8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서울특별시종로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종로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림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의 산림법 위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과태료 납입고지서”로 하고, 동조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과태료 납입고지서의 송달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제7조 중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6조(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의 과태료 부과근거란 중 “법 제42조제1항제1호”를 “법 제80조제3항제 2호”

로, “법 제42조제1항제2호”를 “법 제80조제3항제4호”로, “법 제42조제1항제3호”를 “법 제80조제3항제6호”로, “법 제42조제2항제1호”를 “법 제80조제4항제2호”로, “법 제42조제2항제2호”를 “법 제80조제3항제1호”로, “법 제42조제2항제3호”를 “법 제80조제3항제5호”로, “법 제42조제2항제4호”를 “법 제80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종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종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 또는 신청을 게을리 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호 중 “호적업무담당주사”를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징수결정·감면결정·과오납금의 환부결정”을 “징수결의·감액결의·과오납금의 환급결의”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과태료 결정자료부”를 “과태료 부과내역서”로, “과태료 징수부”를 “과태료 수납내역서”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과태료 부과내역서 작성)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가족관계등록신고 또는 신청 접수 즉시 동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징수결정)”을 “(징수결의)”로 하고, 동조 중 “과태료 결정자료부”를 “과태료 부과내역서”로, “징수결정”을 “징수결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납기개시 5일 전에 과태료 납부통지”를 “과태료 납부통지”로 하고, 동조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중 “과태료 결정 자료부와 과태료 징수부”를 “과태료 부과내역서와 과태료 수납내역서”로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제9조제3항 중 “과태료 결정자료부”를 “과태료 부과내역서”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132조의2제2항”을 “법 제12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132조의2제4항”을 “법 제124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 태 료 부 과 대 상

부 과 대 상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법 제122조 해당인 경우	법 제121조 해당인 경우
1.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출생신고)	법 제44조	5만원	10만원
2. 기아를 찾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록부정정)	법 제53조	5만원	10만원
3.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	법 제58조	5만원	10만원
4. 유언집행자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법 제59조	5만원	10만원
5. 사산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사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인지태아의 사산신고)	법 제60조	5만원	10만원
6.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입양취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입양취소신고)	법 제65조	5만원	10만원
7.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파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재판에 의한 파양신고)	법 제66조	5만원	10만원
8.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친양자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친양자의 입양신고)	법 제67조	5만원	10만원
9.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친양자 파양신고)	법 제69조	5만원	10만원

부 과 대 상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법 제122조 해당의 경우	법 제121조 해당의 경우
10.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친양자 입양취소신고)	법 제70조	5만원	10만원
11.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재판에 의한 혼 인신고)	법 제72조	5만원	10만원
12.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혼인 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혼인취소 신고)	법 제73조	5만원	10만원
13.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혼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재판에 의한 이혼 신고)	법 제78조	5만원	10만원
14. 부모가 미성년의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 할 자를 정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친권 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모의 친권자 지정신고)	법 제79조 제1항	5만원	10만원
15.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친권이 나 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지정·변경신고 를 아니한 자 (친권 또는 관리권의 상실·사 퇴·회복·지정·변경에 따른 친권자변경신고)	법 제79조 제2항	5만원	10만원
16. 후견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후견개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후견개시신고)	법 제80조	5만원	10만원
17. 후임자는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후견 인 경질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후견인 경질신고)	법 제81조	5만원	10만원
18. 후견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후견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후견종료신고)	법 제83조	5만원	10만원
19.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망신고)	법 제84조	5만원	10만원

부 과 대 상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법 제122조 해당의 경우	법 제121조 해당의 경우
20. 사망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록 불명자, 인식불능자의 사망)	법 제90조	5만원	10만원
21. 재판 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실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실종신고신고)	법 제92조	5만원	10만원
22.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성과 본을 신고하지 아니한자(국적 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	법 제96조	5만원	10만원
23. 국적상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국적상실신고)	법 제97조	5만원	10만원
24.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명신고)	법 제99조	5만원	10만원
25. 재판이 확정된날로부터 1월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성·본 변경신고)	법 제100조	5만원	10만원
26.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법 제101조	5만원	10만원
27.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창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법 제103조	5만원	10만원
28. 정정허가 재판이 있었을 때 1월 이내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허가의 등록부정정신청)	법 제106조	5만원	10만원

부 과 대 상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법 제122조 해당의 경우	법 제121조 해당의 경우
29.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판결에 의 한 등록부의 정정신청)	법 제107조	5만원	10만원

【별표 2】

과 태 료 부 과 기 준

계을리한 기간	과 태 료	
	법 제122조 위반	법 제121조 위반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이상 1월미만	20,000원	40,000원
1월이상 3월미만	30,000원	60,000원
3월이상 6월미만	40,000원	80,000원
6월이상	50,000원	100,000원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 부과내역서

[illegible]

※ 작성요령

- ① 과세내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또는 제121조와 [별표1]의 근거법령안 해당조문을 기입
- ② 과태료 금액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제5항에 의한 금액기입
- ③ 사전징수한 경우 과세내역란에 “년, 월, 일 사전징수”라 기재하고 담당자 날인

과 태 료 수 납 내 역 서

※ 이의한 사건은 비고란에 이의서 접수일자를 기재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다.

※ 이의한 사건은 비고란에 이의서 접수일자를 기재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종 로 구

호발 제 호

수신 : 신고(신청)의무 ○○○

제목 : 과태료 납부 통지

귀하는 아래와 같이 신고(신청)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 이내에 이의사유 및 그 소명자료를 첨부한 과태료처분이의서를 당 구청(동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신고(신청)

가. 사건본인의 성명 :

등록기준지

나. 사건명 :

2. 신고의무자 :

3.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

4. 납부할 과태료의 금액 :

5. 과태료를 납부할 곳 :

6. 과태료 납부기한 :

년 월 일

종로구청 (동)장 ○ ○ ○ (직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별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일원화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 8725호, 공포 2007.12.21, 시행 2008.6.22)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관련 규칙을 이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과태료 납입고지서의 송달 방법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 10조를 준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함
- 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 다. 그 밖에 납입고지서, 독촉고지서 등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

고 시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8-27호

주택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1동 2-1번지의 4필지 송인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공사완료 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동법 제52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사업
2. 사업의 명칭 : 송인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 사업의 위치 : 종로구 송인1동 2-1호외 4필지(구번지 : 송인1동 20번지 일대)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3동 3-3
 - 나. 성 명 : 송인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이성만

5. 준공인가내역

가. 시행면적 : 24,445.50㎡(토지목록 별첨)

나. 대지면적 : 22,375.50㎡

다. 건축면적 : 5,101.65㎡

라. 건축연면적 : 63,885.62㎡

마. 사업규모 : 지하4층/지상12층, 아파트 6개동 4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정비기반시설(공공시설)

- 도 로 : 1,193.80㎡

- 경관녹지 : 876.20㎡

6. 사업시행기간 : 2003. 12. ~ 2008. 6.

7. 기타사항

준공인가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주택과(☎731-140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끝.

토 지 목 록

○ 사업명 : 송인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1	송인1동 2-1	대지	22,375.5	송인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2	" 2-2	도로	907.7	종로구	
3	" 2-3	공원	223.7	종로구	
4	" 2-4	공원	652.5	종로구	
5	" 2-5	도로	286.1	종로구	
계	5필지		24,445.5		

※ 정정고시 : 도시계획과-9021(2008.6.9.)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제2008-25호(2008.6.7)로 고시한 내용 중 소유자 이전
등으로 인한 권리변경 내역에서 종전 소유자 김세권을 김
교찬으로, 김교찬은 김세권으로, 소유자(권리자)에서 홍적
식을 홍정식으로 변경을 정정고시합니다.